



고용노동부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수신 대구고용노동청 관내 사업주지원 단체 귀중

(경유)

제목 임금체불 사건처리 절차 개선 및 간이대지급금 처리절차 강화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대내외 경영사정의 악화로 2024. 4월 대구·경북 지역 신고사건은 10,020건 접수되어 전년동기 대비 20.1% 증가하고,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498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 407억원에 비해 22.3% 증가하여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용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붙임1 참조)
4. 귀 기관 소속의 사업장에 위 체불사업주 용자제도를 안내하시어 회원사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 이와 더불어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신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임금 등이 체불되어 노동관서에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출석일 전에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노력할 것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 점검 방법>

- ① (노동법 교육)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 접속 → 노동길라잡이 → 노동법 교육자료에서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동영상 시청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관련 내용은 사업장 지도감독 → 「노무관리 가이드북」 참조
- ② (자가진단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 접속 → 사업장 지도감독 →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내려받아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그 자가진단표는 사업장 내에 보관
- ③ (전문가 활용) 자가진단 실시후, 필요시 노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철저히 노무관리

5. 우리청에서는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법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부인하거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재판과정을 거처도록 정식의견서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을 신청**하고,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를 강화하여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6. 이와 더불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시에는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하여 발급하고, 올해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확대하고, **확인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가담자(사업주, 근로자 등)를 형사처벌 및 배액환수(최대 5배) 조치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신고 다발 사업장 및 대지급금 다수 수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필요시 산업안전 감독 병행)을 실시**하고, 감독 시에도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재감독을 실시하는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7. 위와 같은 내용을 소속 사업주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건과 관련하여 대구고용노동청에서 2024. 5. 13. 언론기관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1. 체불사업주 용자제도 안내문 1부  
2. 보도자료 1부. 끝.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팀장	구강미	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접수
우 4214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근로개선지도1과		/ <a href="http://www.moel.go.kr/daegu">http://www.moel.go.kr/daegu</a>
전화번호 053-667-6220	팩스번호 0508-8230-0509	/ <a href="mailto:kutopia9@korea.kr">kutopia9@korea.kr</a>	/ 비공개(6,7)